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99

발의연월일: 2025. 1. 14.

발 의 자: 김선교·김성원·김위상

서천호 • 구자근 • 김상훈

정동만 · 최보윤 · 박덕흠

최수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계선(繁船)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리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리청은 신고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현행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은 계선 신고 대상 선박에서 제외되어, 계선 신고 없이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이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선박 계선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또한, 예선 및 예선업 등록 및 관리 규정 적용 대상을 무역항에서 활동하는 선박에 한정하고 있어,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의 경우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 대로 방치 및 선박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이 법에 따른 예선 및 예선업 적용 규정 대상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확대하여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까지 관리를 강화하고 선박 및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4조).

법률 제 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무역항"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선박"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전단 중 "무역항"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무역항별"을 각각 "무역항의 수상구역등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단서 중 "무역항"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역항별"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역항별"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무역항"을 각각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예선이"를 "수상구역등의 예선이"로, "무역항에"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무역항"을 "무역항의 수상 구역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선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무역항은 아니지만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예 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예선업 등록자로 본다. 다 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 을 갖추어 예선업을 등록하여야 하되,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 는 사유가 없어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예선"(曳船)이란 「선박안전	4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예	
인선(曳引船)(이하 "예인선"이	
라 한다) 중 <u>무역항</u> 에 출입하	무역항의 수상구역
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	<u> </u>
기거나 밀어서 이안(離岸)ㆍ	
접안(接岸) • 계류(繫留)를 보	
조하는 선박을 말한다.	
5. ~ 13. (생 략)	5. ~ 13. (현행과 같음)
제7조(선박의 계선 신고 등) ① <u>총</u>	제7조(선박의 계선 신고 등) ① <u>선</u>
<u>톤수 20톤 이상의 선박</u> 을 무역	<u>박</u>
항의 수상구역등에 계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예선업의 등록 등) ① <u>무</u>	제24조(예선업의 등록 등) ① <u>무</u>
<u>역항</u> 에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	역항의 수상구역등
(이하"예선업"이라 한다)을 하	
려는 자는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	

부렁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은 <u>무역항별</u>로 하 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 여야 한다.
- 1. 예선은 자기소유예선[자기 명의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 선(裸傭船) 또는 자기 소유로 약정된 리스예선을 포함한다] 으로서 해양수산부렁으로 정 하는 무역항별 예선보유기준 에 따른 마력[이하 "예항력" (曳航力)이라 한다]과 척수가 적합할 것
- 2. · 3. (생략)
- 4. 예선의 선령(船齡)이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 합하되, 등록 또는 변경등록 당시 해당 예선의 선령이 12 년 이하일 것. 다만, 관리청이 예선 수요가 적어 사업의 수 익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무역 항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는 선박의 경우와 해양환경공단

② 무역항의 수상
<u>구역등별</u>
1
<u>무역항의 수상구역등별</u>
2. · 3. (현행과 같음)
4
<u> </u>

조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선박을 배치하고자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무역항별 예선보유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무역항에 대하여하나의 예선업으로 등록하게 할수 있다.
- 1. 1개의 <u>무역항</u>에 출입하는 선 박의 수가 적은 경우
- 2. 2개 이상의 <u>무역항</u>이 인접한경우
- ④ 관리청은 예선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선업이 등록된 무역항의 <u>예선이</u> 아닌 다른 <u>무역항에</u> 등록된 예선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다른 <u>무역항</u>에 등록된 예선을 이용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③
무역항의 수상구역등별
<u>.</u>
1 <u>무역항의 수상구역등</u>
2 무역항의 수상구
2무역항의 수상구역등
<u>역등</u>
<u>역등</u>
<u>역등</u>
<u>역등</u>
역 등 ④
<u>역등</u>
<u>역등</u> ④ <u>수상구역등의 예</u> 선이
<u>역등</u>
<u>역등</u> ④

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